#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검토보고

#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윤희 의원 외 15명

나. 의안번호 : 제1233호

다. 발의일자 : 2016. 5. 30

라. 회부일자 : 2016. 5. 31

# 2. 제안사유

○ 최근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원·정원 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여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나. 시민·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장려를 위한 사항 (안 제12조)
- 다. 일반시민 대상의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운영·인증 및 민간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5조)
- 라. 정원문화 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수행사업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마. 시민 여가생활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정원박람회의 개최, 운영 및 박람회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제1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부서와 협의

다.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요

-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은 「수목원·정원의 조성과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4년부터 시작된 민선 6기 서울시 공원녹지 분야의 정책비전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임. 푸른도시국에서는 비전인 '천개의 숲과 천개의 정원' 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원녹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정원문화 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비롯한 시민참여 원칙 등과 함께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정책의 추진(안 제 7조~제10조)

-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정원진흥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할 것인가? 변경 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정기적인 보완이나 수정·변경 규정 없이 수립된 '정원진흥 실시계획'은 사회적 요구나 트렌드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2)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의 지원 (안 제11조~제16조)

-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원 및 정원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서울시 3개 대학교와 협력하여 시민정원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시민주도 녹화운동 및 녹색 자원봉사 활성을 위해 '시민정원사',
  '시민조경아카데미', '아름다운 정원가꾸미' 등 다양한 정원문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정원전문가 육성은 매우 필요한 사항임.
  그러나 정원관련 전문가를 무분별하게 양산하기 보다는 자격기준과 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제16조 서울정원지원센터는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원센터는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아 또다른 논란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

므로 제16조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16조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법인 및 단체에 그 사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문화 지원사업은 업무 특성상 '대행'으로 제한할 근거가 되지 않으므로 '위탁'할 수 있음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

#### 3) 정원박람회 (안 제17조~제19조)

- 2015년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정원박람회는 52개 업체 및 공공기관 15개의 참여로 80개 서울정원을 조성하였고, 정원산업 우수제품 전시, 정원문화 배우기, 생활정원만들기, 정원문화 즐기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그 결과, 256건의 방송과 언론보도를 통해 서울 정원박람회 홍보효과가 나타났으며, 57개 기관과 단체가 방문하였고 10일간의 박람회기간 동안 총 87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받았음.
- 대규모 공원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 좁은 땅에서도 정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정원디자인을 보여주는 정원박람회 개최를 조례로 정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한다면 서울시 정원문화활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제18조(정원박람회의 개최)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는 것은 개최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정원박람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원박 람회 개최 기간에 대한 명시가 필요할 것임.

## 4) 법령입안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수정 보완

-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목적규정은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목적규정에는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현행 목적규정에 있는 약어(이하 "정원법")을 삭제하고, 목적 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제7조에 사용하도록 수정하여야 함.
-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3조와 제4조2항의 '강구한다'는 '마련 한다'로 수정 하여야 함.